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정유정 의원 대표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범위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회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발체사항 1부
다. 현행 조례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대회 참가”를 “대회 및 행사 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비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u>대회 참가</u> 에 따른 필요한 비용	2. ----- <u>대회 및 행사 참가</u> ----- --
<u><신 설></u>	3. <u>소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u> <u>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u> <u>그와 관련한 유지·관리비</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재정지원 등) (생 략)	제5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u> <u>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u> <u>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u> <u>다.</u>

관련법령 발췌사항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를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를 보조
4. 화재예방업무를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 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